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00609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재판경과

춘천지방법원 2022. 6. 22 선고 2021나34920 판결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18다261797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8. 7. 24 선고 2017나51096 판결

대법원 2017. 3. 22 선고 2015다200609 판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5316 판결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9. 3 선고 2012가단562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A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덕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와

담당변호사 김준동, 박환택, 홍성필, 서태용, 이호인, 최정지

원 심 판 결 춘천지방법원 2014. 12. 12. 선고 2013나5316 판결

판 결 선 고 2017. 3. 22.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2 목록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춘천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정명의인의 동일성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별지1 목록 기재 각 토지의 사정명의인 R와 원고의 선대인 R가 동일인이라고 판단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2. 원심 별지1 목록 제3항, 제4항, 제9항, 제10항 기재 각 토지의 상환 완료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심 별지1 목록 제3항, 제4항, 제9항, 제10항 기재 각 토지는 수분배자들의 상환절차가 완료되지 아니하여 수분배자들에게 분배되지 않는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었다고 판단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설시한 이유에 일부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으나,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3. 원심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의 점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로를 점유하는 형태는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와 사실상의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기존의 사실상의 도로에 도로법에 의한 노선인정의 공고 및 도로구역의 결정이 있거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획사업의 시행으로 도로설정이 된 때에는 이때부터 도로관리청으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도로법 등에 의한 도로의 설정행위가 없더라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존의 사실상 도로에 대하여 확장, 도로포장 또는 하수도 설치 등 도로의 개축 또는 유지보수공사를 시행하여 일반 공중의 교통에 이용한 때에는 이때부터 그 도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실상 지배하에 있는 것으로 보아 사실상 지배주체로서의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19804 판결,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2151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원심 별지2 목록 제1항 기재 토지가 1995. 1. 17. 국토 BW호선으로 지정 고시되어 도로법상 도로구역으로 관리되어 왔다는 이유로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도로구역으로서 점유하고 있다고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다.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의하면, ① 1995. 1. 17.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CB로 CC~CD간 국토 BW호선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할 때에 이 부분 토지가 도로구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였고, 1999. 8. 9.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고시 CE로 도로구역결정(변경) 고시를 할 때에 추가된 토지세목에도 이 부분 토지가 포함되어 있지 아니한 사실, ② 이 부분 토지는 현재까지 사다리형 완경사의 형태로 임야 상태로 존재하고 있고, 그 북측 인근에 국토 BW호선이 통과하고 있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 이러한 사실관계 및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부분 토지와 인접한 토지인 여주시 CF 도로와 CG

도로는 모두 그 형상에 비추어 국도 BW호선의 안전과 기능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비탈면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나, 이 부분 토지는 국도 BW호선의 경계와 많이 떨어져 있어 이러한 비탈면에 해당하는지 의문인 점, ② 1심 감정인 BS가 2012. 7. 27. 작성한 감정평가서에는 이 부분 토지가 군도 CH호선의 도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반면, 2013. 11. 18.자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이와 달리 국도 BW호선의 도로구역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국도 BW호선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피고가 이 부분 토지를 국도 BW호선의 부지로 점유하고 있다고 잘못 단정하고 그 전제에서 이 부분 토지에 관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국가의 도로의 점유·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였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판단을 그르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한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4. 원심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27㎡의 점유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타인의 토지 중 일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함으로써 인하여 나머지 토지 부분이 과소토지로 남게 되어 사실상 소유자가 그 과소토지 부분을 자신이 원하는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타인의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한 자는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그 과소토지 부분을 포함한 당해 토지 전부에 대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소유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0828 판결 등 참조).

나. 기록을 살펴보면, 별지2 목록 제2항 기재 토지 중 피고가 그 점유·사용을 인정하고 있는 647㎡를 제외한 나머지 27㎡가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잡종지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 그러나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위 27㎡를 포함하여 이 부분 토지 전체에 대하여 피고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것은 결과적으로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5. 원심 별지2 목록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의 부당이득반환의무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1) 원심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11,415㎡ 중 6,845㎡와 같은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202㎡ 중 47㎡를 피고가 점유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나머지 토지에 대하여는 그 채택 증거에 의하여 피고가 농지, 도로, 주택, 창고 부지 등의 용도로 점유하고 있으며, 2) 별지2 목록 제6항 기재 토지는 피고로부터 주변 토지를 대부받은 사람들이 농지로 이용함으로써 피고가 이를 계속 점유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피고는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들의 점유로 인한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1) 1961. 12. 30. 법률 제892호로 제정되어 1962. 1. 1.부터 시행된 제정 하천법에 의하면 지방2급하천의 하천구역은 관리청이 이를 결정·고시함으로써 정하여진다. 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전부 개정되어 1971. 7. 20.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 및 1999. 2. 8. 법률 제5893호로 전부 개정되어 1999. 8. 9.부터 시행된 구 하천법(이하 위 2개의 법률을 통틀어 '구 하천법'이라고 한다)은 하천구간 내의 토지 중에서 일정한 구역을 하천구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해당하는 구역은 당연히 하천구역이 된다. 2007. 4. 6. 법률 제8338호로 전부 개정되어 2008. 4. 7.부터 시행된 현행 하천법에 의하면 관리청이 하천구역을 결정·고시함으로써 하천구역이 정하여진다. 한편 구 하천법은 각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하천구역을 유수지 및 유수가 흐른 흔적을 나타내는 토지의 구역(가목), 하천부속물의 부지인 토지의 구역(나목), 제외지(다목) 등으로 규정하고, 같은 항 제3호에서 구 하천법에 의하여 설치된 제방 기타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하천부속물이라고 규정하면서 다만 관리청 이외의 자가 설치한 시설 등에 관하여는 관리청이 당해 시설 등을 하천부속물로 관리하기 위하여 당해 시설 등의 설치자의 동의를 얻은 것에 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관리청이 제방 설치자의 동의를 얻지 않았을 때에는 위 나목 소정의 하천구역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며, 그 제방이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인 경우에는 하천관리청이 그 제방을 하천부속물로서 관리하는 것임을 요한다(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97062 판결 등 참조).

그리고 토지가 지방2급하천 구역으로 적법하게 편입되었다면 소유자로서는 이로 인하여 사용수익에 관한 사권의 행사에 제한을 받아 손해를 입고 있다고 하여도,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음은 별론으로

하고 하천관리청의 점유를 권원 없는 점유와 같이 보아 부당이득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대법원 1994. 11. 18. 선고 93다30686 판결, 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다211278 판결 등 참조).

한편 하천법이 정한 지방2급하천의 관리청은 관할도지사이어서 그 하천구역 토지에 대한 국가의 점유를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6다6461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이 부분 토지들과 원심 별지2 목록 제4항 기재 토지는 1957. 12. 30. 분할 전 토지인 여주시 1 전 7,702평에서 분할되면서 그 지목이 하천으로 변경되었다.

나) 여주시가 경기도건설본부장에게 회신한 내용에 이 부분 토지들은 지방2급하천인 CI천의 하천구역(제외지)에 편입된 토지인데, 그 편입시기 및 하천공사의 시행 여부는 자료부재로 인해 알 수 없다고 기재되어 있다.

다) 경기도지사는 1995. 4. 18. 경기도 공고 CJ로 구 하천법 제15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CI천 등에 대한 하천정비기본계획(변경) 결정을 하였는데, 그 당시 작성된 하천대장에 이 부분 토지들이 하천구역으로 등재되어 있다.

라) 여주시 CK면장은 CL에게, ① 2007. 1. 2. 원심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하천 점용허가를 하였고, ② 2008. 1. 14. 원심 별지2 목록 제5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하였으며, ③ 2013. 9. 10. 원심 별지2목록 제3항 기재 토지 중 일부에 대하여 공유수면 점·사용 변경허가를 하였다.

마) 원심 별지2 목록 제3항 기재 토지의 동쪽 경계선상에 CI천의 제방이 설치되어 있고, 그 위에 군도 CM호선의 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3)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부분 토지들이 지방2급하천인 CI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어 있는지, CI천의 하천구역으로 편입되었다면 그 시기 및 그 당시에 적용되는 하천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편입된 것인지, 피고가 하천관리청으로서 이 부분 토지들을 점유,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확정하지 않고서는 피고의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유무를 판단할 수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위와 같은 점을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채 그 판시와 같은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부분 토지들에 대하여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단정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관련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들은 이유 있다.

6. 원심 별지2 목록 제2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토지의 선의의 점유자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1) 피고는 별지2 목록 제2항, 제7항, 제8항 기재 각 토지를 정당한 권원 없이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원고에게 그 점유이익상당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다음, 2) 피고가 이 부분 토지들에 관하여 과실수취권을 포함하는 권원이 있음을 오신할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민법 제201조 제1항에서 정한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라는 피고의 항변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나.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과실수취권이 있는 선의의 점유자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한편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결들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7. 원심 별지2 목록 제11항, 제14항, 제15항 기재 각 토지의 부당이득액 산정에 대한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별지2 목록 제11항, 제14항, 제15항 기재 각 토지가 도로로 개설되기 전에 도로의 형태를 갖추고 일반공중의 통행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토지들의 현황을 전 또는 답으로 보고 부당이득액을 산정하였다.

나. 관련 법리에 비추어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

8. 결론

원심판결의 피고 패소 부분 중 원심 별지2 목록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기재 각 토지에 관한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박병대 주 심 대법관 박보영 대법관 권순일